

상속 소유권이전등기 준비 서류

대상자	서류명
피상속인 (망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기본증명서(상세),•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•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•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(상세)• 입양관계증명서(상세)• 주민등록말소자초본(주소변동 사항 포함)• <u>태어나서 사망시까지의 모든 제적등본</u> 위 서류 각 1부. <p>※ 관공서발급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일 것.</p>
상속인 (각 개인별로 준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기본증명서(상세)•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• 주민등록등본• 신분증 사본• 인감도장• 인감증명서(본인발급용)• 상속재산분할협의서(상속인들 인감날인) <p>위 서류 각 1부</p> <p>※ 관공서발급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일 것.</p>

인본합동법무사 이병찬사무소

서울 강남구 논현로 425, 4층 401호 (역삼동,마이다스빌딩)

Tel. 02-2285-3800 Fax. 02-6280-3811

e-mail : bc3579@hanmail.net 홈페이지 : <https://naturelaw.kr>

계좌 : 신한은행 110-200-528493 이병찬법무사